

## 기숙사 의무식 안내

1. 대상 : 기숙사 사생 전원

2. 의무식 시행 목적

우리대학은 전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대학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위한 최소인원의 부족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아울러 식수인원 부족은 식대인상 또는 식단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먹는 불편이 더욱 가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사생 전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식 원칙을 시행하여 식단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스런 기숙사 식당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함.

3. 의무식 예외 운영의 문제점

- 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등 원칙이 없는 운영으로 식수인원 감소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 식수 인원 예측의 불가능으로 식당에서는 식사량 조절의 어려움.
- 간혹 식사량 예측 부족으로 학생들은 식사시간이 조금 늦어도 반찬이 떨어져 있는 등 부족한 반찬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었음.
- 아울러 식당 음식을 담당하고 조리하시는 여사님들께서도 추가로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과 더불어 부족한 반찬을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반찬재료의 제한적 상황에서 만들어 내는 반찬이다보니 식단의 질 저하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임.
- 또한 이와 반대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식수인원 예상 부족으로 많은 양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반으로 폐기 처분하는 상황 등 문제가 있음.(잔반처리 비용 증대)

4. 의무식 시행 원칙

- 기숙사는 개인의 공간이 아닌 단체가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식 원칙에 따른다.
- 개인적으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의무식은 기숙사 사생 모두를 위한 원칙이므로 전원 의무식에 참여한다.
- 만약 의무식 원칙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학생은 단체 생활인 기숙사 입사를 원치 않는 학생으로 판단한다.

## 5. 의무식 제외 대상자

### 가. 조건(재학생)

- 식이조절 및 제한이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 의사의 확진 진단서 제출 시 급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식으로 전환
- 진단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 요망(환급기간은 2월 28일 이전 개인통장으로 입금 예정임)

### 나. 기타

- 휴학생
-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 4학년 2학기 재학생(2일이하 잔류 학생 해당 : 시간표 제출, 2일 초과 잔류학생은 의무식 적용)  
※ 매식단가 및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단가는 차후 500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예정
- 진단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 요망(환급기간은 2월 28일 이전 개인통장으로 입금 예정임)

## 6. 식단가

- 의무식 학생 단가 : 3,500원(월요일~목요일)
- 매식 단가 : 4,000원(의무식 제외학생 및 금요일~일요일)
-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단가 : 4,000원
- 교직원 단가 : 4,500원(추후 협의)
- 외부인 단가 : 6,000원  
※ 매식단가 적용 시범 운영 대상(기간 2019학년도 1학기 한정)

## 7. 개선효과

첫째, 식사의 질이 향상됨.(식수인원 증가 예상)

둘째, 불필요한 음식 낭비가 줄어들음.(정확한 식수인원 파악으로 적절한 양의 음식을 준비 가능)

셋째, 식당 서비스가 개선 됨.

넷째, 기숙사 사생 모든 공동체가 수혜자가 됨.

다섯째, 서비스와 질의 개선으로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사생 건강관리에 유용함.